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9일 07시 08분



목차

목차	2
공동주택관리	3
2023년 상반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근절을 위한 홍보자료	3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현황	사업승인현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허가동향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역주택조합사업구역 현황

2023년 상반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근절을 위한 홍보자료

2023.06.07 조회수 111 등록자 조만호

1. 주방용 오물분쇄기는「하수도법」제33조 및「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으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불법제품 유통방지와 하수 수질악화를 예방하고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게시판, 승강기 홍보물 게시대 등에 부착하여 입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 홍보자료 1(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pdf (80 hit/ 1.09 MB) ↓
미리보기
- 📄 홍보자료 2(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pdf (81 hit/ 1.42 MB) ↓
미리보기
- 📄 홍보자료 3(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jpg (69 hit/ 337.1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나무의자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나무의사 제...

다음글
충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

Yeosu Web Contents

